

개인보증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 ☐ 정부가 발표*한 금융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와 개인보증 내규 상 전세사기피해자를 일치

* 「전세사기피해자등 유형 및 지원대책」(‘23.6.1, 국토교통부)

- ☐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 출시

3. 주요 제·개정 내용

- ☐ 전세사기피해자 대상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추가
- ☐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보증비율 및 보증한도 계산 방법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도착 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김수철 차장(145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32
- 팩스번호 : 0505-036-0293

붙임 :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전후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자) 규정 제2조제17호에 따른 대상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자) 규정 제2조제17호에 따른 대상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을 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확대		
제98조(특례전세자금보증) ① ~ ④ (생략) 〈신설〉	제98조(특례전세자금보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전세자금보증은 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보증인 또는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전세자금보증 채무이행으로 발생한 구상권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관계자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보증제한 대상자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전세 자금보증 이용 허용		
〈신설〉	부칙 (5) 이 시행세칙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시기 부칙신설		
[별표1] 보증종류별 보증과목 및 보증구분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전세 자금보증 출시		
보증 종류	보증 과목		보증구분	보증 비율
4. 전세 자금 보증	특례		(1) ~ (6) (생략)	(생략)
			〈신설〉	〈신설〉
			(7) ~ (14) (생략)	(생략)
보증 종류	보증 과목	보증구분	보증 비율	
4. 전세 자금 보증	특례	(1) ~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전세사기피해자	100%	
		(8) ~ (15) (현행 (7) 부터 (14)까지와 같음)	(현행 (7) 부터 (14) 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2] 신청건별 보증한도 계산			[별표2] 신청건별 보증한도 계산			
보증종류		4. 전세자금보증	보증종류		4. 전세자금보증	
보증 과목	보증 구분	보증한도 계산 방법	보증 과목	보증 구분	보증한도 계산 방법	
특례	(1) ~ (6) (생략)	(생략)	특례	(1) ~ (6) (현행 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신설></u>	<u><신설></u>	<u><신설></u>	특례	<u>(7) 전세사기피해자</u>	<u>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u> <u>(1) 보증과목 및 보증구분별 보증한도 :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u> <u>① 2억원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주1)}</u> <u>② 1억원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주1)}</u> <u>(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u> <u>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u> <u>① 임차보증금 × 90% 이내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주1)}</u> <u>② 임차보증금 -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련 동일인 경·공매 배당·배분금^{주2)}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주1)}</u> <u>(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산정 생략</u> <u>주1) 기 이용 중인 주택도시보증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 목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 보증잔액의 차감 적용 배제</u> <u>주2) 경·공매 배당·배분금으로 기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한 경우 경·공매 배당·배분금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환금액만큼 차감 가능</u>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전세 자금보증 출시						

현행			개정안			비고
보증종류		4. 전세자금보증	보증종류		4. 전세자금보증	
보증 과목	보증 구분	보증한도 계산 방법	보증 과목	보증 구분	보증한도 계산 방법	
특례	<u>(7)</u> ~ <u>(14)</u> (생략)	(생략)	특례	<u>(8)</u> ~ <u>(15)</u> (현행 (7) 부터 (14) 까지 와 같음)	(현행 (7)부터 (14)까지와 같음)	